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박물관 소장유물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여 변화된 업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소장유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장 유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제1항)

나. 소장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도난·훼손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35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 mpfive7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효율적”을 “정기적으로 소장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소장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도난·훼손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유물관리) ① 시장은 소장 유물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u>효율적</u> 으 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유물관리) ① ----- ----- ----- <u>정기적으로 소</u> <u>장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u> <u>하고 효율적</u> --.
② ~ ④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소장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u> <u>인하여 망실·도난·훼손되었</u> <u>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u> <u>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u> <u>수 있다.</u>